

제410회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3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3년11월22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4)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4)
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1)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1)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5)
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6)
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0)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7)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7)
13.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2)
14.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0)
15.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0017)
1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3)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8)
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6)
1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
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6)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
2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
2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8)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3)

상정된 안건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4) 2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4) 2
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 2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1) 2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1) 2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5) 3
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6) 3
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0) 3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 3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 3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7) 3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7) 3
13.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2) 3
14.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0) ... 3
15.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0017) 3
1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3) ... 3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8) 3
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6) 3
1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 3
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 3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6) 3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 3
2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 3
2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8) 3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3) 3

(15시36분 개의)

○소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2시 반에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한 시간 지연이 됐습니다.

정부 측이나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4)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4)

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1)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1)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5)
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6)
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0)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7)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7)
13.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2)
14.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0)
15.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0017)
1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3)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8)
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6)
1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
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6)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
2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
2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708)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3)

○소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2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월 13일 2차 법안소위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의결한 이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는 동안 두 달 이상 지났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과거 소위에서 논의하였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한 법안과 어제 포함 9월 이후에 상정한 법안과 결의안을 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김진표 의원과 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1항입니다.

1쪽입니다.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사용되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조정하고 그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재원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와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 2024년도 보통교부금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668억 원이 감소하고 같은 금액이 특별교부금으로 증액되어 AI 교원연수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에 보시면 각 지역교육청의 의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부칙을 보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교부율 보정요건을 법률로 상향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원 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현행 내국세분 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행법 규정이……

대체토론 두 번째 줄입니다.

‘교원 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상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크게 달라질 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라는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이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장상윤 1항, 김진표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은 저희가 디지털교육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각 교육청에다가 교원연수라든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항, 이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령으로 올리는 내용이기기는 하지만 현재 이 조항 자체가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교원의 인건비만을 요건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내국세 교부금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계속 증감의 폭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라는 장치를 고민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법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유특회계, 고특회계 일몰이 25년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국회, 교육청, 재정당국과 함께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안정장치를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 첫 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특교 비율이 3%로 준 게 몇 년 안 되거든요. 그걸 줄일 때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어떤 근거와 취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자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기본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이 특교율이 지나치게 높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교육청의 자율적 교육 집행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이런 오래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게 4%였다가 3%로 준 거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고.

그다음에 적어도 교부금 예산과 관련해서 일정한 변화를 하려면 현재 교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저는 반드시 점검하고 어떤 법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교부금을 집행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2001년 이후에 2019년까지 매해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2021년하고 22년 코로나 시기에 아주 예외적으로 형성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세수가 예외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러면서 내국세가 늘어난 아주 특수한 상황을 너무 일반화시키고 있는데 2019년까지는 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 그리고 그나마 2018년까지 발행한 지방채 상환도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비로소 상황이 완료된 상태라는 거예요. 현재 지역교육청들이 예산상에서 충분히 남아돈다, 평평 함부로 쓰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비난이나 비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59조 원 핑크 나 가지고 교부금 당장 11조 타격받았고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경기는 계속 침체를 예견해서 이점 몇 프로로 시작했던 올해 경제성장률도 1.4%까지 내려간 상태고 앞으로도 이게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하고 그러면 내국세에 연동해서 교부금이 집행되는데 당연히 교부금은 이 상태로 가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명약관화해요. 거기다가 작년에 교육위에서 이게 커다란 쟁점이 돼서 갈등 요인이었던 교부금, 지금 고등교육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별도의 국고 예산으로 충당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비판 논리로 교부금에서 1.5조까지 상시적으로 3년 동안

때 주기로 했잖아요.

거기다가 유보통합, 오늘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예산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추산되는 것, 보건복지부 예산 5조 말고도 추가적으로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거의 10조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교육부나 윤석열 정부는 교부금에 다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고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내는 난방비, 냉방비, 온갖 공공요금에다가 이것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들어갈 예산 자체가 저는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님께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실 때는 AI 교육이나 디지털 교육 이런 에듀테크 흐름에 맞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하셨을 것 같지만 지금 교부금 상황은 거꾸로 교부금 비율을 줄여야 될 판입니다, 사실은. 특교의 비율을 줄여서 학교로 가는 교육활동 예산을 늘려야 될 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육부에다가 질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이 법안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교사 AI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높이기 위한 것에 주로 1% 늘린 특교 예산을 쓴다고 그렇게 법안에는 돼 있는데요, 방과후하고. 올해 2023년도에 AI 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총예산이 630억이에요. 그런데 특교를 만일 1% 늘리면 6700억입니다. 실제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돈은 63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거의 10배나 키워 가지고 완전히 일반 교육활동 예산을 쓸 수 없도록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AI를 어떻게 얼마나, 도대체 6700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민이나 해 보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께서서는 강민정 위원님의 재원 확보나 교부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차관 장상윤 의견 조금만 드리면요 저희가 특교 1%p를 올리는 돈이, 특교가 늘어나면

교부금이 당연히 보통교부금은 줄어들지만 이 특교로 확보된 재원이 학교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것을 왜 6년 한시로 이렇게 짧게라도 이 돈을 써야 되느냐. 디지털 대전환,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것들이 현장에 25년부터 들어오게 되면 교사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 50만 교원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역할 변화를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워서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몇 년간은 투자를 해서 교실 변화를 학교에다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 부분은 물론 내국세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민감한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교부금만 해도 68.9조 원을 책정했는데 최근 5년의 흐름을 보면, 평균적으로 최근 5년 대비해서 내년도만 해도 한 13% 증가한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물론 소요가 많기는 하지만 기재부에서, 물론 기재부 예측이 조금씩 빗나가기도 하긴 하지만 23년부터 27년까지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매년 한 3.7%씩 늘도록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셔도, 아닌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특회계나 고특회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어쨌든 큰 틀의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건지 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특교를 이렇게 따로 편성하는 게 이 돈이 학교로 안 가고 국가에서 그냥 알아서 쓰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아니, 저……

○소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강민정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고요.

○강민정 위원 아니, 제 말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저 답변에 대해서만 제가 짧게……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최소한의 시간으로 해 주세요.

○강민정 위원 예.

3.8%인가 이렇게 예상한 것 있다고 했는데 예상해 놓고 11조 다 깎아 먹었어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더 안 벌어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이 장관 하실 때 2012년에 누리과정 돈 확실하게 때 낼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15년도에 세수 추계를 쭉 하고 교부금이 45조가 될 거라고 추산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리과정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주호 장관이 제시했던 49조가 안 건혀졌어요. 실제로는 그 당시 예산, 내국세 비율로 한 교부금 예산이 10조나 적은 39조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부의 수준인 겁니다. 이것은 있지도 않은 부도 수표를 믿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 학교로 간다? 다 학교로 가지요, 교육 예산이. 그런데 이게 칸막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특정한 목적을, 말하자면 목적 예산을 칸막이를 두고 이것 6년 치, 이 법안대로 하면 6년 치인데 6년 치 다 합하면 4조가 넘어요. 이렇게 많은 돈의 예산을 학교로 간다는 말로 통칠 수 없다. 이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지 오히려 이걸 지지하는 건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야니까,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일단은 김진표 의장님 발의안과 관련해서, 이게 크게 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거든요.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이러저러한 물적 시설이나 여건 이런 것을 보다 보면 당연히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늘 우리가, 이게 국회의장님이어서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국회가 국가의 미래를 가장 장기적으로 보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는 내용의 개정안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결국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2항도 같이 논의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영호 예.

○권은희 위원 2항과 관련해서, 저는 개정 취지를 혹시 교육부가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부금 보정이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시행령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 개정으로 굳이 상향시키는 개정 취지가 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가 개정 취지로 알고 있는 것은 인건비처럼 경직성 경비 그다음에 교

육에 꼭 필수적인 것들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교부금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이 됐을 때 보정률을 조정해서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조항인데, 이게 2004년도에, 굉장히 오래전에 도입됐는데 그때 보정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존의 봉급교부금하고 경상교부금, 2개로 나뉘어 있던 게 합쳐지면서 그 당시에는 학령인구가 폭증하고 선생님들이 늘어나니까 혹시라도 인건비 때문에, 봉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될까 해서 안정 장치로 넣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에 그 정도까지 작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인건비만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법에다가 해서 이렇게…… 또 학령인구가 줄고 교원이 한 해에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늘어날 상황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 취지가 교부금 재원을 경직성 경비 이외에 재량껏 쓸 수 있는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라면, 안정 장치를 두는 거라면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권은희 위원 개정 취지를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이 개정안의 개정 취지도 결국은 인건비 관련한 교부금 보정, 이것 현행과 거의 동일한 요건이고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건데 일단은 교부금 보정 요건과 관련된 제도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거고……

○교육부차관 장상윤 시행령에……

○권은희 위원 시행령이 보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규정하는 법체계가 맞는데 이걸 굳이 법률로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교육부가 설명하는 내용 또 이 개정안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정 취지가 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위원장님, 개정 취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동용 위원 위원장님, 1항하고 2항이 지금…… 1항이 사실 논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섞지 말고 좀 분리해서 이것을 하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김영호 분리해서요? 아까 정부 측에서 설명을 전문위원이랑 같이 하셨길래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러면 논의를 할 때는 1항, 2항을 분리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조정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AI 전문 인재 수가 30개의 주요

국가 가운데 22위로 죽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진표 의장님께서 미래의 우리 먹거리인 AI와 관련된 교육이 절실하다 하는 이런 것을 해외를 다니시면서 죽 보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부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가 우리나라가 116만 2597명입니다. 거기에 공기업에 있는 공무원들이 37만 5000명이에요. 이걸 합치니까 154만 명인데 여기다가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훨씬 더 늘어나겠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 활동인구가 2939만 명인데 적게는 아마 17명당 1명꼴로 공무원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이 수치로 되면. 그래서 해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수십 조씩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세수도 부족하고 또 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AI는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의 재정은 재정대로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쓰자 하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지금 최고 시급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전 세계의 추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급속도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올해 총 GDP 수준이 13위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멕시코 이런 나라들 보니까 줄줄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보니까 그 나라들이 우리를 추월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국가가 제가 주목하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GDP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과학기술로, 인력으로 인적자원으로써 이걸 극복해 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국회의장께서 이런 시급함을,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 법안을 제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여유 있는 부분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급한 데다가 인재 육성하는 데 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진표 의장님의 이 법안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것을 잘 짚어 본다면 저는 이 법안

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입장은 어떨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정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100% 똑 같고요. 저희도 의장님께서 그런 문제인식하에 절박한 심정으로 발의하신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 교부금, 교부세가 중앙정부 재원입니까, 아니면 지방정부 재원입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지방정부 재원입니다.

○**강득구 위원** 지방정부 재원이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교부금을 계산해서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득구 위원** 저는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조경태 위원님의 김진표 의장님 말씀 취지의 근거, 예를 들면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말한 취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 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입니다. 이것을 지방재정으로 하는 게 맞나, 중앙정부 재원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특교의 비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게, 어쨌거나 지방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의 입장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교부세의 취지가 그렇다라는 걸 일단 인정.

두 번째,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지방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 인정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 다 공감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가 재원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특교 비율을 높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교육자치와 그리고 교부금, 교부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반하는 거다라는 게 제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내년 예산 기준으로 개정안 통과 시에 늘어나는 예산이 6668억

아래요. 그리고 AI 기반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국책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교육청들이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수요를 저희가 좀 치밀하게 해서 단기간 내에 잘 진행을 해 보자.

○**서동용 위원**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각 교육청이 알아서 할 걸 강제적으로 항목을 떼서 칸막이를 일부러 쳐 주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습니다.

○**서동용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개입된 거라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 특별교부금을 사용하자는 건데, 보통 디바이스 구입비는 일반교부금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여기에 있는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에 그런 인프라나 기기 이런 것도 초기에 넣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해석이 됩니다.

○**서동용 위원** 지금 교육부가 마련한 법률안에 의하면……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가 법안을 마련한 건 아니고요.

○**서동용 위원** 처음에 김진표 의장님이 준비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출된 안에 의하면 디바이스 구입비하고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하고, 이 두 개가 막 섞여서 사용될 여지들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도별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방책들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가 어쨌든 이 법을 추진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구요.

두 번째로 아까 강민정 위원도, 강득구 위원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지만 올해만 해도 교부금에서 10.5조 세수 핑크가 났습니다. 앞으로 세수가 축소될 시에 대책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 그게 ‘이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하셔서 그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 8월 31일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교

육부가 시·도교육청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중 검토 의견도 있었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교육청도 있었어요.

교육자치의 핵심은 재정이고 그 재정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들이 교육청들인데 이 교육청들의 의견을 전체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합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노력 없이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논의가 제대로 숙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 교육자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이 법이 발의되고 나 가지고 저희가 10일간 걸쳐서 교육청에 의견 제시를 부탁드려서 취합을 했는데 어쨌든 교육청, 저희도 좀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재량껏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을 일정 부분을 떼서 특정한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재량을 굉장히 제약을 하는 문제라고 해서……

그런데 자료 4쪽 보시면 알겠지만 명확하게 이것은 신중 검토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종교육청 정도였고요. 이견이 없다는 곳이 다섯 군데, 이견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디지털 대전환을 앞두고 교원에 대한 연수, 교원의 역할 변화가 교육청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연수를 시켜 주면 거기에 동의를 한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물론 미제출한 8곳이 있는데 대체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교육청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이것도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지금 여러 위원, 거의 한 분석은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은 입법 취지는 다 찬성하시고 동의하시는데 결국은 세수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재원 확보에 대한 안정감이 없다는 것, 약간 예측 불가능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에 1항은 일단은 지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서 의결하기는, 확실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

문에 조금 더 지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장님 법안이기는 하지만……

○조경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호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물론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세수도 올해도 보면 수십조가……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요.

○조경태 위원 지금 바닥이 나고 하는 상황에서 그때 해 가지고 AI와 관련된 인재 육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한테는 큰 낭패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를 표기해서라도 의장님께서 법안을 자주 만들지 않는 분이신데 존중도 하는 의미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이걸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이태규 간사님 말씀을 안 하셨네요.

○이태규 위원 저도 여기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야 의원님들이 이 법안에 참여를 하였고 또 김진표 의장님께서도 경제부총리에 이어 교육부총리도 오랫동안 해서 또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교육 대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 또 그런 디지털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지방자치의 영역, 시·도 교육청의 의견도 있겠지만 아마 그 취지에도 시·도교육청이 공감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정책이 수혜되는 대상자들은 역시 또 시·도교육청, 지방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정부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거나 교부금의 일정 부분을 떼서 중앙정부가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런 관점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법은 한시법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정도만 일단 한시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한시적인 사용 기한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 법

안을 수정 의결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 교육에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 줘야겠다. 이게 의장님이 낸 법안인데 의장 체면을 봐서 통과시키자 이런 주장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장님의 생각이, 저는 그 방향성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공동발의에 같이 참여를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데……

○강득구 위원 아니, 저는……

○소위원장 김영호 올해 위낙 충격적인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전망도 그렇게 밝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같은데……

○강득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호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세요?

○강득구 위원 저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인다는 건 그만큼 지방자치, 교육자치라는 입장에서 보면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안 그래도 열악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상황들을 감안하면 훨씬 더 열악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한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건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다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교육자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각 지역 지방교육청마다 자율성, 상황에 맞는 그런 입장들에 대한 존중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보면. 그게 맞냐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교육감협의회에서 동의 정도는 받아 와야 된다. 조금 전에 예를 들면 이견 없음이란 미제출은 같은 개념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 하셨으면 최소한

교육감협의회에서 동의는 받아 온다 그러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이번 국감에서 각 교육청의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된 시책을 한번 점검을 해 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 교육청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방향을 공통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을 하고 있고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기기 보급 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비슷한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큰 편차를 보이는 곳이 역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이게 시·도교육청의 편차가 너무 커서 사실은 이것을 방치를 해서 그대로 놓아두면 이게 결국은 어느 곳에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이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특별교부금의 편성으로 이런 부분들을 평준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 시책을 점검하면서 느낀 평가였고 그런 취지에 맞는 개정 법률안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

○소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것은 저희가 한 5시쯤에 잠시 휴식을 취할 거거든요. 그때 한 10분 정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논의는 잠시 이후로 미뤄 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논의할 법안이 너무 많은데 너무 지체돼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2항으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토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2항과 관련해서 아까 차관께서 지금 인건비와 관련된 이 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상황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한 번도 작동된 적은 없습니다.

○강민정 위원 그렇지요. 법 시행령이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법상으로 상향하자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인 거고 사실은 시행령이 작동이 안 됐다고 말하지 않고 제가 얘기드리는데 인건비 때문에, 교부금에 비해서 인건비 증가액이 커서 이것을 작동시켜야 될 상황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민정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먼 얘기도 아니고 20년, 3년 전에 인건비 전년 대비 6397억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6397억 증가한 20년은 교원 정원을 계속 줄여 가고 있는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해에 교부금이 2조 2600억 정도가 감축됐어요. 나중에 추경으로 감액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주 가까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시행령에 있는데 왜 작동이 안 됐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시행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법화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근거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내용이 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강력하게 그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별로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서 교부율은 시행령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교부율이나 실체는 구체적 액수까지, 예를 들면 유특 같은 경우 2만원 이런 액수까지도 정해 놓지 않습니까, 법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입법 체계상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저는 접근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경제 실패에 따른 세수 부족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만 10조 넘게 줄어들 전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간 지방교육 예산은 고등교육특별회계 편성과 유보통합 추가 재원 부담 등으로 인해서 재정결손 사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에서 경직성 예산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교원 인건비 이걸 교부율 조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내년에는 유특회계가 만료되고 내후년에 고특회계가 만료되고 이러면서 특별회계 성격으로 임시방편 쪽으로 미뤄 났던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서 교부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교육자치보장의 필요성들은 더욱 강조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교부금의 안정적 확

보 방안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교원 인건비만을 요건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내국세 교부금의 전년 대비 비정상적인 증감에 대한 포괄적 보정 조항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조금 더 큰 틀에서 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않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서동용 위원** 그러면 이것만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인건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를 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라면 인건비를 가지고 보정 비율을 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차관 장상윤**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서동용 위원** 예?

○**교육부차관 장상윤**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서동용 위원** 지금 정부가 주신 의견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교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취지가 아니라면 이 법을 반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 이야기대로 내국세 교부금의 전년 대비 비정상적인 증감에 따른 포괄적인 보정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방안을 마련해 오셔야 되는데 그 방안을 준비를 안 하고 지금 이것을 오히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논리로 쓰고 계세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교원 수 증감처럼 이렇게 특정한 사유가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됐을 때 보정률을 조정하는 거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 조항으로 담보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큰 틀에서 보자고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아까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교원 인건비 증가액이 내국세 교부금 증가액을 2.9조 원 정도 초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저희 법에 보시게 되면 보정 요건으로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라고 규정을 했는데 교원 숫자로 보면 전년 대비 한 1100명이 그 당시에 증가를 해서 0.4% 정도 변동이 있었고요. 교원인건비를 나중에 결산을 해 보니까 평년 수준인 3.8%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1년도 기억하시겠지만 재정 상황이 인건비 초과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조 원이었는데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한 7.1조 원이 추경이나 세계잉여금으로 연도 중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보정 장치가 인건비를 고수하기 위한 장치로서 있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친다 해서 인건비만을 가지고 이것을 고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을 개정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있는 안정화기금 외에 좀 실효성 있는 안정성 확보 장치 같은 것들을, 이 특별회계 종료되는 시점에 어차피 논의가 필요하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2항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항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논의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1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내용은 2쪽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장상윤** 소위 자료 6쪽에 보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수용 의견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지난 소위 때 몇 가지 쟁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법에다가 수수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체계상 맞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공제회에 권한을 부여했을 때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좀 예비던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있어서, 3쪽을 보시게 되면 그간에 저희가 법제처에서 권고한 것들 이런 것들을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본 결과 결국은 이 교직원공제회법에다가 법적 근거를 갖추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법적으로도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4쪽에 보시게 되면 4월 달에 저희가 사용자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용 현장의 의견이 S2B 그러니까 지금 교직원공제회에서 하는 학교장터가 학교 현장에 맞춤형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업체의 상생에 오히려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S2B를 폐지할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 업무 부담이나 대체 플랫폼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는 학교 대상 수수료 인상보다 공급업체에 일부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게 영세업체에 부담이 된다기보다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충분히 작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수료율을 정할 때 이미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과도한 수수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이 돼 있다라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차관님 지난번에는 학교장터 시스템 자체가 필요 없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서동용 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또 입장이

확 180도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갑자기라기보다는 저희 내부 검토도 하고 의견을 듣고서……

○**서동용 위원** 저희는 법을 바꾸자고 주장했던 사람 입장에서 교육부가 입장을 바꿔 주면 좋은 일이지는 합니까만 갑작스러운 입장의 변화에 조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 답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오늘 필요한 몇 가지만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저희가 쟁점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종래 교육부의 입장과 좀 바뀐 입장들을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이걸 조금 할가분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소위원장 김영호** 지금이요?

○**서동용 위원** 아니요. 그건……

○**강민정 위원** 추후? 정리는 추후?

○**서동용 위원** 지금 정리가 되시나요?

○**교육부교원정책과장 신진용** 예.

○**소위원장 김영호** 지금 정리가 되면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부교원정책과장 신진용**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드리면 일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가지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주셨었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판단 그리고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사단법인으로서 자조 조직이기는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고 그다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자조 조직임과 동시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라고 의견을 썼고, 저희가 세 군데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요. 이 법률 자문에서도 공공성 인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소위 당시에서 공급업체에게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수수료 부과 이외에 사적 계약

을 통한 수수료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군데 법률 자문을 구했고 네 군데 모두 사적 계약을 통한 수수료에 대한 징수는 일종의 탈법 행위로 볼 수 있고 지정 취소 사유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리고 저희가 자료로……

○**이태규 위원** 뭘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어.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지금 법률 자문받았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교육부교원정책과장 신진용** 지난 소위 때 지적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태규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4페이지 보니까 학교장터 수수료 인상에 대한 학교 의견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장터 물품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까지 인상된다면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교원공제회를 공공기관으로 본다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장터가 일반 시중보다 물품이 비싸거나, 물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수수료까지 또 올려받고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학교나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요, 물론 손해 보면서 존재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율을 누가 정합니까? 교원공제회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교육부차관 장상윤** 임의가 아니라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이태규 위원** 그럼 여기에서 거래되는 물품이 비싸다는 인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독점을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효율성을 위하고 학교의 교과나 이런 데 필요한 물품 한 군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구매하고 여러 가지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조달청의 나라장터하고는 좀 특화된 공간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것이 만약에 독점화될 경우에 그 독점화에 따른 최소한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내가 여기 보니까 그런 의

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이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는 법안 자체에 제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법안이 통과가 돼서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는 구매자나 여기의 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편익성이 높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교원공제회는 돈 벌고 나머지는 비싸게 물품 구입하고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이 법이 통과된다고 그래서 학교장터가 독점 공급, 독점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 학교장터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학교장터가 조달청 시스템하고 달리 소액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고, 그게 에듀파인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학교에서는 회계 처리하기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국은 다 국민 세금으로 구매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지요.

○**이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비싸게 구매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세금을 아껴 써야 되는 거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물품이 일반 시중이나 이런 데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 문제예요.

○**소위원장 김영호** 굉장히 타당한 지적 같으세요.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이게 나라장터 영역 밖에서 아주 물량을 소규모로 구매하고 이런 경우 지금 학교장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학교장터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냐? 수수료를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당초 반대를 하고 교육부와 교직원공제회가 입장이 확 나누어졌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교육부가 입장을 달리했는데……

학교장터에서 볼펜 다섯 다스, 연필 10개 이렇게 살 때, 소규모로 살 때 학교장터를 이용하는데 만약에 학교장터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어디를 사용해야 되냐면 주로 쿠팡 같은 데를 사용해요. 거기는 수수료가 10%가 넘어요. 여기는 수수료 1%짜리고요.

○권은희 위원 대신 쓴 게 많지요.

○서동용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학교한테도 훨씬 유리한 일이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필요성이 있었던 것인데, 말씀하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물품 비싸다는 인식은 교직원공제회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인식이 됐는지.

교직원공제회 나오셨나요?

○한국교직원공제회사운영부장 박병철 예.

○소위원장 김영호 사실 비싼지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권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쿠팡은 수수료가 높는데 거기는 싸고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플랫폼하고 경쟁했을 적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위원장 김영호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사운영부장 박병철 교직원공제회 S2B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업운영부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S2B 물품 비싸다는 인식은 광범위하게 저희가 해석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수많은 사람이 하나의 물품을 살 때 어떤 이는 비싸다고 인식을 하고 어떤 이는 싸다고 인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S2B 물품이 전부 비싸다고 했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부의 교직원 선생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태규 위원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직원공제회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떤 대표적인 물품에 있어서 이 학교장터에서 파는 단가가 얼마고 그것이 쿠팡이나 어떤 다른 플랫폼에서 하면 얼마다.

○소위원장 김영호 가격 비교가 되잖아요.

○이태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봐야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사운영부장 박병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급업체가 물품을 S2B에 올립니다. 등록을 하는데 1000원에 파는 사람이 올릴 수도 있고 1만 원에 파는 사람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싼 사람이 공급 물품을 제공하면 그것을 사면 되겠지만 그 공급업체가 올리지 않으면 저희 S2B에는 1000원짜리가 안 올라오면 1만 원짜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1만 원짜리가 비싸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장터에 쇼핑물도 있고 쿠팡에서 살 수도 있고 그 앞에 있는 문방구점에서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싼 상품은 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게 올라왔을 때 교직원 입장에서는 싼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사실은 비싸다는 인식보다 그 뒤의 부분이, 수수료까지 인상된다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비싸다는 인식도 있는데 학교한테 수수료까지 인상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따라서 공급업체에게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S2B 수수료 인상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제 우려가 회계의 편리성 때문에 비싼 거를 감수하고도 혹시 구매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데 그럴 염려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사운영부장 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의 담당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싸게 살 수……

○소위원장 김영호 가격 비교가 되니까 그런 것을……

○한국교직원공제회사운영부장 박병철 그렇지요. 더 싸게 사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서 사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공급업체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저가에 오면 좋은 것이고요. 대기업들은 되도록 싼 가격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량 물품들은. 그런데 중소상공인들은 좀 낮은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깊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검토할 게 굉장히 많아지네요.

○강민정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S2B는요, 학교에서 나라장터에서도 기본적으로 구매를 해요.

○소위원장 김영호 잠시 앉으세요.

○강민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1년 동안 학교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해서,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대량으로 같이 다 수요가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은 사실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구매하는데 학교는 교과목별로, 학년별로 교육과정이 되게 다르고 이게 막 1년 내내 지속되지 않고 한두 시간 교육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다. 이렇게 규모는 작으면서 교육과정에 특화된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합한 그런 것을, 주로 그런 물품을 거래하는 용도로 S2B가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 나라장터 이걸 없애고 학교가 만약에 이것만 거래 사이트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학교교육의 특수성에 맞게 소액·소량 그리고 그 학교의 교육과정에 특화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달하는 창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강득구 위원 한마디만 더 하면요, S2B에서 거래되는 업체가 한 구만오륙천 업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100만 원 미만이 76%가 넘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는 경쟁입찰이고요 S2B는 수의입니다. 그리고 이 S2B를 이용할 수도 있고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쿠팡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중소 영세상인들이나 중소기업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S2B가 또 다른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선택권들은 다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수수료여기는 1%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태규 간사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그 우려가 해소됐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정부 측과 교직원공제회에서 설명을 해 주신 만큼 합의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위원장님, 수정 내용이 조그마한 게 있거든요. 8쪽에 보시면……

○소위원장 김영호 8쪽이요?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예,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용료도 부과하고 수수료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처럼 비쳐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부 의견이고요, 저희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해서……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예, 수정의견으로……

○소위원장 김영호 예, 수정의견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도 지난 소위 때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내용은 같은 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장상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의식 함양을 하자는 그 개정 취지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행 개별법으로 국가인권위법, 자살예방법에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시책 추진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또 자살예방법에 내년 7월 달에 시행되는 조항이 추가됐는데 거기에 국가·지자체·초중고 및 대학 구성원에 대해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자유로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잘 안 지켜지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저께입니까, 초등학생이 돌 던져 가지고 70대 어르신이 돌아가셨잖아요. 아시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조경태 위원 또 며칠 전에는 용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교육부? 며칠 전에도 학생들끼리 패싸움하고 학생들끼리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폭행해 가지고 애가 엄청나게 많이 다친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교육부가…… 인권위원회에서 한하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육부에서 이걸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린애들부터 아이들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느끼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한 요즘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마약에 대한 것도 많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드시고 부쩍 보면 요즘에 고층 아파트…… 요즘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채수 없으면 죽어요. 특히 애들이 장난, ‘그것 왜 던졌니?’ 하니까 장난친다고 던졌다 하더라고. 이런 불안한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정부가 요즘 유보통합 이야기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생명에 대한 소중함 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은 인식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법률안을 낸 취지거든요. 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뭐 있다는 것은 내가 잘 알지만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걸 좀 더 강화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서동용 위원 창밖으로 병 못 던지게 하는 것하고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인식을 함양하는 것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 다만 그러나 어쨌든 생명존중문화를 더 확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그리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인데 여기에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이나 학습

윤리의 확립,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과 같은 규범적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생명존중에 대한 조문이 포함돼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강민정 위원 저도 이런 취지에는 이견이 없고.

그런데 이것의 근거가 돼서 그동안 계속 반복돼 왔던, 예를 들면 교육기본법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생명존중 예방교육을 연간 몇 시간 해야 되는 이런 식의, 교육과정을 약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저는 여기서 드리고. 이런 교육은 조경태 위원 말씀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이태규 간사님 입장 말씀해 주시면, 이태규 간사님이 동의하면 이것은 의결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저도 여기 특별하게 반대할 것은 없는데 다만 결국은 하나의 인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성사회 어른들이 이렇게 해 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저것 다 하는 것보다 어느 시점인가 한 번은 종합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커 가는지, 정말 경쟁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방법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울 적에 생명존중이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교육은 지난 20년 이상 실패해 왔다고 저는 봐요. 오로지 수능, 학력고사 이렇게 대학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달려왔기 때문에 그런 속에 지금 조경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생명존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자연적으로 같이 사라져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 법과 별개로 교육 당국의 정책 책임자들의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강득구 위원 저도 한마디……

○소위원장 김영호 예,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 저는 조경태 위원님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이 개념적 사안이 교육기본법에 다 담겨지는 게 이게 맞느냐라는 고민도 합니다. 동시에……

차관님!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득구 위원** 현재 부과돼 있는 법정의무교육을 정비하는 것 이것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사실 너무 많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렇지요? 저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 보면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고통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교육부차관 장상윤** 너무 많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고민을 해서 현장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번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인간의 존엄성, 생명존중 백번 강조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법안이랑 중복된다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데 저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이것은 정부 측에서도, 강조하자는 얘기니까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합의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예, 합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김영호 의원, 이태규 의원, 윤영덕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들도 소위에서 한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김영호 의원안은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임시교사 등의 교육시설은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태규 의원안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대학교 기숙사·합숙소 등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영덕 의원안도 특수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초·중등학교 기숙사·합숙소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4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 때 주요 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장상윤** 먼저 소위 심사자료 6쪽을 보시게 되면 유치원부터 대학 기숙사·합숙소까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금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10쪽을 봐 주시게 되면요, 지난 소위 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하나의 케이스, 어떤 경우에 설치해야 되느냐가…… 여기 ‘적용 교육시설’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그중에 원래 이태규 의원님 안에 있던 ‘대수선’이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대수선은 빠지고 원래 없었던 ‘증축’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스프링클러 설치 상황하고는 적합하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드리고요. 설치 대상은 종합적으로 봐서 유치원부터 임시교실까지를 포함한 대상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11쪽을 보시게 되면 설치 기준은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부터 교육감, 시설의 장이 있었는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으로 수정하는 게,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설치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설치지원이나 준용 법률은 이태규 의원님 안에 나온 것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대령에 따라 지원하고 또 준용하는 법률은 이게 스프링클러가 소방시설이다 보니까 소방시설, 그다음에 화재예방 안전관리법을 따르도록 하는 게 적합하다고 의견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되면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법안 제출한 것 중에 스프링클러 대상 시설은 정부 측에서 다 수용하겠다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 민형배 의원안이 기존 교육시설에도 소급 적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아닙니다.

○서동용 위원 그건 안 하시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왜 그러냐면 기존 교육시설까지 소급 적용을 하려면 기간을 정해 두고 뭔가 공사를 다 벌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너무 큰 작업이고 여기 법안의 취지가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공사가 벌어졌을 때 같이 하자는 의미니까 임시교실 정도는 저희가 넣어서 임시교실을 만들 때 넣어야 되겠다 그러지만 기존 건물에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임시교실이라는 건 모듈러 교실을 포함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습니다.

○서동용 위원 아니, 오히려 기존 시설이 스프링클러의 필요성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소방점검을 하고 화재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도 어쨌든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법안에 이걸 넣어 놓고 구체적인 시행계획들을 대령으로 정한달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몰라도 이것을 쏙 빼버리고 나면 화재 위험이 가장 큰 데들이 오히려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화재안전 얘기할 때 학교 교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피가 먼저 필요한 공간이고 가능한 공간이고요, 공간 구조상. 여기에 들어간 것처럼 기숙사나 폐쇄된, 24시간 있을 만한 그런 쪽들이 오히려 위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신설을

할 때 당연히 소방시설, 방화구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지금 대상을 정해 놓고 신축, 증축, 개축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넣자라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기존 학교에 대한 것도 중장기 계획을 잘 짜야 되겠다는 취지니까요.

○서동용 위원 어쨌든 중장기 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자칫 이렇게 법이 바뀌고 나면 오히려 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기존 시설들은 완전히 등한시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가 화재안전 정책에 따라서 이 법안하고는 별도로 특수학교는 25년, 초·중등학교 기숙사는 26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연차별 계획을 시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특별히 또 의견이 있으신가요?

○강민정 위원 지금 수립돼 있다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영호 그것은 법안소위뿐만 아니라 교육위원님들에게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

○교육부차관 장상윤 위원장님, 22쪽에 보시게 되면 안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22쪽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그게 뭐냐면 임시교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듈러 교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건데요. 지금 안은 구조물 조립방식의 임시교실 등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 보건 등 안전성 확보 의무화를 26조의4를 신설하는 쪽으로 해서 규정을 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보시게 되면, 27쪽 되겠습니다. 27쪽에 현행에 없는 것이 개정안으로 신설되는 26조의4가 있는데요.

1항을 보시게 되면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임시교실 등’ 이렇게 해서 모듈러 교실이나 임시교실을 규정을 해 놓고 이런 교실들은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방화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2항하고 3항은 ‘임시교실 등 교육시

설이 소방시설법에 따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 또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이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2항하고 3항은 앞쪽에 저희가 대상에 임시교실이 들어가 있고 스프링클러 의무화가 나와 있고 국가 지원이나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문을 정리를 하면 '임시교실 등'이라고 이렇게 해서 좀 불확정 개념으로 해놔서 오히려 이 법의 정의 규정에다가 임시교실을 정의를 하고 이 조항이 아니고 10조의4를 신설해 가지고 임시교실은 여기 1항에 나와 있는 '임시교실은 안전기준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신설하는 걸로 조문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입법 취지를 담아서.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26조의4 이것은 없애고?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이 있습니다. 31쪽 부칙을 보시게 되면 이 법이 '공포 후 1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시행 날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건축물을 적용하느냐에 적용례가 또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정부 수정의견 안에 보시게 되면 '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는 분' 그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그 당시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조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권은희 위원 아까 정부가 수정해서 정리했다는 안은 이 정부 수정의견, 이걸 설명하신 건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26조의4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은희 위원 예.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게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면 이 법에 2조……

○강민정 위원 있으면 그 한 쪽만 복사해서 확인하는 게 어때요? 저렇게 듣기만 하면 약간……

○소위원장 김영호 예, 그래도 되고요. 이것은 대안 의결할 거거든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저희가 2쪽을 복사를 해 가지고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시면 지금부터 한 15분만 휴식을 취하면서 복사본도 같이 참고하고 아

까 1항에 대한 논의를 조금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올라온 자료들 다 검토하셨는지요? 검토하셔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대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강민정 위원 잠시만요. 이것 아까 얘기했던 24조 그것을 2조 11호로 올려서 하겠다는 거지요? 임시교실 정의?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2조 11호에 임시교실을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10조의4를 만들어서 임시교실의 어떤 안전성 확보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강민정 위원 여기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항인데요. 저희가 25항을 보면 강민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항과 25항을 병합 심사를 하도록 해서 9항을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뒤로요? 예.

○소위원장 김영호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서병수 의원, 남인순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먼저 의사일정 10항입니다.

대학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 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 있었고요. 2페이지에 소위 논의 내용이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1항입니다.

이 부분은 2쪽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도 전문대학에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현재 물리치료사는 전문대학 3년제 과정하고 대학 4년제 과정으로 이원화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과정을 마치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데 교육과정의 다르다는 이유로 약간의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제 과정을 하는 전문대에서도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이 들어온 것입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고등교육법상 전공심화과정을 통해서 3년제 대학을 나온 학생들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하고요.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들이 의료기사로 같이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2항입니다.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7에서 회의록 공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회의록의 공개 방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규정되어 있

지 않던 사항인 회의록의 공개 기간까지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회의록의 공개 기간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회의록이 일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가 삭제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각 대학의 장은 등록금의 산정 근거를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 해당 규정은 회의록을 3년 동안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회의록을 5년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회의록 공개 방법을 교육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 공개 방법을 개정안은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 법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내용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장상윤 먼저 의사일정 10항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3쪽을 보시게 되면 내용이 지난번 소위 때 다중운집 행사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 이후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강화하려는 내용인데요. 범위하고 구체적인 책임의 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소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쪽 오른쪽에 보면 일부 수정 의견으로 개정 조문안을 좀 수정해 봤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27조의2에 ‘학교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같고요. 다만 제일 하단에 보시게 되면 그걸 명확하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 행사를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심사 자료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게 행사를 주최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또 이게 단순한 집회나 이런 것하고 헛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그때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심사 자료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1의2 끝에다가 ‘단,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한한다’라는 조항을 단서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을 수정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10항은 그렇고요.

11항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전문대학에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취지인데, 결론적으로 신중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3년제 과정에서 이수를 하고 물리치료사 시험을 봐 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구조인데 1년의 추가 소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추가 소요 비용이 더 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의료기사라는 게 물리치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6개의 직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도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물리치료사만 4년으로 할 경우에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2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먼저 2쪽에 보시게 되면, 회의록 학교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게재가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등심위 회의록은 3년 동안 대학알리미 통해 공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홈페이지 게재 기간도 3년으로 통일을 하는 게 일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게 되면 회의록 공개방법을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미 대통령령을 통해 가지고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조항은 오히려 교육부령으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대로 두고 이 조항은 그냥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최종하지만 10항에서 입학식·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과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라고 규정했는데 여기는 견학·여행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나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래서 저희가 단서조항을 ‘단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한한다’, 이렇게 되면 그런 단순 견학이나 와서 이렇게 있다가 발생하는 것들은……

○소위원장 김영호 지금은 수학여행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학교의 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게 되면……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입학·졸업식, 여기에다가 수학여행 정도는 하나 더 추가로……

○강민정 위원 그것은 교육과정의 일환이라……

○소위원장 김영호 교육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강민정 위원 예, 학교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다 포함이 되나?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민정 위원 수학여행, 체험활동도……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린 건데요.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제가 지난번 소위 할 때도 의견을 드렸는데 이렇게 조문을 신설할 입법 필요성, 실익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행법 27조의2 3항에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넣으면 되는 내용을 왜 법에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사고 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내용은 대통령령에 넣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지금 고등교육법에 넣겠다라고 하는데 초등·중등 교육 현장에서의 예방과 대응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입법을 해야 할 필요성과 실익에 대해서 차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물론 법 개정을 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있는 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발의가 된 배경이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밀집 행사에서 큰 이슈가 됐던 재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응해 보자,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하고는 달리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학교장이 안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행사를 하는 그런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초중등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를 따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교육 내용에 대한 표준안도 만들어서 보급해서 아주 규격화된 또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어서 그것을 고등교육법에 강조를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법의 두께를 이렇게 자꾸 두껍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필요한 것은 반드시 규정을 해서 조금 선언적 의미로서나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실익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서류에 편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정부 수정의견을 보면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행사에 한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습니다.

○서동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중등 학교하고 같은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 밖의 일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 특성상……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적용되지 않을 규정들을 또 만들어 놓는 이게 뭐가 좋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런데 이태원 참사 나고서도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내지는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학교처럼 어떤 등교 시간, 교육활동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누구를 따라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입학·졸업식 이런 축제들도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하고 다를 바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 위해요소가 크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강득구 위원 한마디만……

역으로 학교에서 주최하지 않는 행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영호 이태규 간사님.

○이태규 위원 저는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대형 안전사고, 참사 이런 부분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관한 규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이것을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금방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을 불러다 같이 공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기가 안전사고 나기 딱 좋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큰 대학들의 기념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쪽에서 일반 연예인들이 공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대여를 하거든요, 일반 행사나 이런 쪽으로,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 주고. 아마 각 대학들이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축제 때 연예인 중에 젊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오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안전이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적에 대형사고가 날 개연성이 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당국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물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대학의 자유로운 집회나 이런 부분들이 제약을 받으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교 당국이 철저하게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이것을 법률로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중운집 행사뿐만 아니라 사실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학교 실습……

○교육부차관 장상윤 실험실 안전사고……

○권은희 위원 실험실에서의 안전사고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현황을 볼 때 학교 당국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책무감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과 책임감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학교는 안전을 책임진다는 이런 인

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정도의 수정의견에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요청을 드립니다.

○서동용 위원 방금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실험실 부분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권은희 위원 적용, 안전……

○서동용 위원 말씀하신 취지가 잘 동의는 안 됩니다만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저도 잠깐만 관련해서,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입법부가 뭘 했냐면 안전교육 강화를 했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고는 아이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아이들 303명의 사망자가 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경계, 이 법 자체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왕에 서동용 위원이 아까 입법과잉인 측면을 경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 이 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장, 고등교육법이니까 총장이거나 학장이겠지요. 그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견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것과 연동해서 개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강화해야 될 부분들은 명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면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입법 과정이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10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의견이 모아진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위원장님, 그리고 별도로 말씀은 안 드렸습시다만 심사자료 7쪽 보면 안전교육에다가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게 추가가 됐고요.

○강민정 위원 어디 있어요, 어디에?

○교육부차관 장상윤 7쪽 보시면……

○소위원장 김영호 몇 항?

○교육부차관 장상윤 27조의2 2항의 4호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8쪽.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리고 9쪽에 보시게 되면 또 신설로 해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 이게 또 별도로 추가가 돼서 그것까지 저희가 이견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민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의무로 다 하고 있고, 이것을 다 하고 있어요.

○이태규 위원 그런데 대학은 아닐 겁니다. 대학은 교육을 안 시킬 겁니다.

○강민정 위원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대학 가는 거잖아요. 12년 동안 의무적으로 매년 이것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이태규 위원 그래서 소비자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았느냐 해서 그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고 해서 할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9%입니다.

○강민정 위원 대학생들 대상으로요?

○이태규 위원 예, 그게 형식적으로 이론 교육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따로 영등포소방서의 협조를 얻어서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심폐소생술 훈련을 국회에서 한번 같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 2분 정도 하니까 저는 손이 아파서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이론 정도 하고 여러 명을 모아 놓고 다 제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학생 한두 명 정도만 해 보라고 하고 넘어가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났을 적에도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현실이 이런겁니다.

차관님,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도교육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게 굉장히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민정 위원 고등교육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법은 고등교육법이라고.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아예 가르치지도 않는 거지요, 당연히.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중등 교육 때 아무리 받아도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가동이 안 되니까 고등 교육에서 추가 교육을 시키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장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 아니, 반대는 아니고.

○소위원장 김영호 반대 안 하시지요.

그러면 10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11항은 정부 측에서는 신중 검토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신중 검토.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이태규 위원 계속…… 이견 합의가 좀 필요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이견 계속 심사하고. 12항.

○서동용 위원 11항은 이야기 안 해요?

○소위원장 김영호 11항은 혹시 계속 심사를 하자는 의견인데……

○서동용 위원 정부가 반대하니까 일단 넘겨 버리는 건가요?

○소위원장 김영호 정부 의견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도……

○이태규 위원 그게 아니라 저도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 물리치료사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서동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 논의를 지금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소위원장 김영호 가능합니다.

○권은희 위원 양성 체계가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서 양성 체계 부분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김영호 서동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견 얘기해 주세요.

○서동용 위원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문대 전문학사 학위과정에 수업 연한을 2년, 3년 이렇게 두면서 의료인을 양성할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대에서 간호학과가 4년제 간호학과를 두는 게 현재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없던 제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당사자들, 그러니까 2년제나

4년제에 따라서 이후에 발생하는, 직업을 갖고 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차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여지들이 있어서 실제로 생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요구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다시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해 가지고 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전문대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그러한데요. 지금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들이 있고 이 필요성은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갖게 되면 이후에 양성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할 수도 있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물리치료사, 안경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등 의료기사들을 한꺼번에 해결을 하자고 하는데 물리치료사들은요 다 병원에 고용이 돼 있어요, 거의 100%. 그런데 다른 의료기사들은 고용돼 있는 사람도 있고 개인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입장들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직종들은 의사 합치가 잘 안 되는데 물리치료사들은 그 직종 내에서 도입에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 직종의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걸 굳이 못 하게 하는 게 맞겠는가.

그러니까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도 4년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직종 내에 이견이 없는 직종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다른 의료기사의 경우에도 4년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기는 한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물리치료사협회에서 회원 교…… 그러니까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데 사실 이것을 다녀야 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물리치료학과를

운영하는 게 전문대도 있고 일반 대학도 4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대도 4년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학보다는 학생하고 학부모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용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물리치료사들은 대부분 합치된 의견을 보인다고 저희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용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건 아니고.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동용 위원 그 사람들은 입장이 다를 수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서동용 위원 그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러면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리치료사협회는 다 동의를 하는데 과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만약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도 동일하고 찬성의 입장이라면 이걸 전체적으로 풀어 줄 수 있는 걸 다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묶어 두는 것보다는 합의된 직역부터, 의료기사부터 이렇게 풀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지금 물리치료사가 3년제, 4년제가 있는데 결국은 3년제든 4년제든 나와서 시험을 쳐야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자격시험을 쳐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자격시험 통과율은 4년제가 더 높나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서동용 위원 그렇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소위원장 김영호 비슷해요?

○서동용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3년제를 두면 학생들이 빨리빨리 자격을 취득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년제를 더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소위원장 김영호 그럴 수 있겠어요, 자격증이

비슷하다면.

○서동용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그럴 수는 있겠지요.

○서동용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통일된 의견으로 찬성을 하시는 거고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서동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권은희 위원 계속 심사……

○소위원장 김영호 이것은 의견을 좀 모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서동용 위원 자료를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이걸 그냥 미뤄 두지 마시고 다음 저희 법안소위 때 심사 가능하도록 조금 집중해서 자료 수집을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장상윤 내일인데 저희가 조금, 밤사이에……

○서동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일은 아닙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다음에.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물리치료사 과정에 대해서 이번에 법안이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주셔서 다음번 우리 법안소위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12항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한 것을 정부 측은 3년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맞습니다.

○강민정 위원 발의하신 유기홍 의원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법안소위가 아닌데 혹시 소통은 해 보셨나요?

○서동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기홍 의원이 3년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소위원장 김영호 그래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가 의원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3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강민정 위원 그러면 3년으로 조정을 해서 그냥……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강민정 위원 그런데 뒤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회의록 공개방법.

○소위원장 김영호 공개방법?

○강민정 위원 예, 앞의 것 11조는 3년으로 조정해서 합의되고 지금 11조 12항에 관해서는 교육부하고 입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호 12항?

○강민정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호 회의록 공개방법 교육부령에 위임……

○서동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령인가 대령인가 그 차이인가요?

○소위원장 김영호 신중 검토로 지금 정부 의견인 것 같은데.

○강민정 위원 제가 의견을 내도 되나요?

○소위원장 김영호 예.

○강민정 위원 지금 교육부하고, 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말하자면 새로 추가된 거잖아요. 9항에서 추가가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신설이 된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굳이 반대할 필요 있나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런데 6쪽 현행 11조를 보시게 되면 11조의 9항에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해서 공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민정 위원 그런데 12항은 교육부령이라서……

○교육부차관 장상윤 다시 교육부령을 거명을 하고 있어서……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 그러네요.

○소위원장 김영호 아까 공개 기간은 5년에서 3년 이것은 교육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정부 측은 바꾸자는 거지요.

○강민정 위원 그러니까 12항 개정이 없어도 지금 11항에 의해서 일단 3년으로 신설된 안에 대해서 대령으로, 이것에 대한 방법론을 어차피 대령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넣지 말자 이런 애가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소위원장 김영호 타당하다고 보세요?

○강민정 위원 예, 그것은 타당한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지민 정부 의견대로 대령에 위임하려면 11조 9항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위임을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쪽에서.

○소위원장 김영호 6쪽이요?

○전문위원 이지민 예.

○소위원장 김영호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전문위원 이지민 지금 현재는 회의록 공개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방법을 법률로 올려서 지금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법률로 끌어 올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임할 사항이 있는지 저는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정부 측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지금 12항은 부령으로 위임한 조항이었기 때문에 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한다’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9항에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정 위원 공개 방식은 11항에서 대령으로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9항을 개정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서를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이지민 예.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겠다고 하면 12항에는 지금 부령으로 절차적인 걸 위임한 조항이기 때문에 9항의 본문에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도 본문에 돼 있습니다, 9항 본문에.

○강민정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위원장 김영호 서동용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어떻게 좀, 전문위원님 말씀……

○서동용 위원 이걸 체계상 문제 없으면 그냥 문제 없는 방향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강민정 위원 조정을 그냥 거기의 위상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대안 의결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2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쉽지만 11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제14항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두 법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를 원상회복에 상응하도록 피해기간 동안의 호봉, 경력, 연금, 보수에 관하여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퇴직한 교원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권은희 의원안은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이 특별 채용되었으나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 동안 호봉, 연금 등에 관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해당 법률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우선 법률 제명이 강득구 의원안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고 권은희 의원 법안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다음, 법률 제정 목적 및 용어와 관련해서 입법목적은 비슷한데 법 적용대상, 용어의 정의, 불이익 해소 범위, 피해기간 등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 적용대상과 입법 목적을 보면 강득구 의원안은 교육과 사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특별 채용된 해직교원과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국·공립사범대학생 중에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특별 채용된 임용제외교원을 법 적용 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위 회복을 통해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

익 해소를 구체적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안은 해직교원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확인된 교원 중에서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 두 번째 졸업 지연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및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 제외된 사람으로 임용제외교원을 정의한 뒤에 이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피해기간 또는 임용제외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해직교원과 임용제외교원을 구분하여 피해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우선 해직교원은 해직된 날로부터 특별채용된 날까지, 임용제외교원은 1989년 7월 25일부터 특별채용일까지의 기간으로 해서 피해기간의 기산점을 특정하고 있고 권은희 의원안은 임용제외기간을 앞서 임용제외교원을 정의한 경우에 따라서 기산일을 1990년 9월 1일 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의 다음 학기 시작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국·공립 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일 전 마지막 학기 시작일과 과목별로 시국사건과 무관하게 임용되지 못한 임용대상자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에 보시면 양 법안의 차이가 표로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두 법안 모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강득구 의원안의 경우에는 피해교원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권은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보수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가의 책무 관련해서 강득구 의원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권은희 의원안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피해교원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피해기간의 근무경력 인정을 통한 지위 등의 원상회복 조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두 제정안 모두 피해기간 또는 임용제외기간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을 해서 이 기간을 공무원연금 경력에 산입하도록 지위의 원상회복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강득구 의원안은 피해기간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고 권은희 의원안은 호봉뿐만 아니라 승진에 필요한 경력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득구 의원안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립학교연금 재직기간에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기간 동안에 미지급된 보수까지 함께 규정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권은희 의원안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만 합산하고 임용제외기간 동안 미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6쪽에 그 차이점이 표로 돼 있습니다.

17쪽에는 관련 기관의 의견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이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대상자가 조금 다르다는 점인데요. 법안이 이렇게 특별법으로 나온 게 지난 6월 7일 날 진화위 결정으로 시국사건 관련해서 임용 제외된 교원들이 다시 복직은 됐지만 그 피해가 복직 후에도 회복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회복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법 취지로 삼는다면 저희는 권은희 의원님 안이 합리적인 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대상을 해직교원까지 포함하기보다는 진화위에서 결정으로 나온 임용제외교원은 정확하게 186명으로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6쪽에 보시게 되면 권은희 의원님 안 중에 임용제외자 186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항에 보면 ‘퇴직교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퇴직교원을 제외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실질적인 회복 조치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조항이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진화위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퇴직교원을 포함하게 되면 연금 산정을 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한다’로 바뀌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15쪽에 보시게 되면 근무경력 인정을 통한 지위 등의 원상회복 조치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호봉 그리고 권은희 의원님 안에 승진에 필요한 경력에 있는데 승진에 필요한 경력을 다시 산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승진이 그간에 이루어진 것의 질서가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에 제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게 되면 권은희 의원님 안 중에 6조 2항에 보면 ‘임용제외교원 중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하여 재직기간 합산으로 발생하는 미납기여금에 대해서는 연금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교원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조항도 같이 빠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정부 의견은 여기에는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23쪽에 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이 법이 만약에 성안이 돼서 통과를 하면 6개월 후에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따져 봤더니 임용제외교원들 중에 24년 2월에 퇴직이 지금 예정된 분들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일 전에 24년 2월이 지나가 버린다면 다시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뒤 가지고, ‘이 법 공포일 당시 재직 중인 자는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런 경과규정을 두면 이 열한 분에 대해서도 피해회복 조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혁신처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동의하는 의견을 썼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수정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권은희 위원 교육부가 진화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서 피해회복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회복을 위한 의견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의견 중에 일단은 첫 번째로 퇴직교원을 제외하는 부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의 시행

으로 인해서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점에서 수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 승진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피해회복이 전체 조직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점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진과 관련해서 제외하는 부분도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시행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후지만 이 법이 공포가 되면 대상자들은 구체적으로 청구권을 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청구권을 보호해 줄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정부 측 수정의견을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 저는 발의자는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같은 취지의 법안이 2개가 나왔는데 일단 차관께서 아까 얘기하시기를 강득구 의원 법안은 그냥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 저는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게 정책적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분들도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자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은 5년의 해직기간 이후에 특별채용 형태로 다시 신규교사로, 호봉을 다 인정받지 못하고 신규교사로 다시 채용이 된 분들이예요, 이 1500명들이.

다만 규모가 커서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재정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이 받은 피해의 성격은 같은 거다. 진화위에서 최근에 이 186명에 대한 결정이 나와서 조금 직접적인 논거가 발생한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입장에서는 강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이 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동의가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판단한 근거나 논거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권은희 의원안 같은 경우 퇴직교원을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 퇴직교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86명 중에?

○교육부차관 장상윤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 9명이에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민정 위원 그런데 제외한 이유가 연금 산

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외의 이유를 드셨는데 이것도 사실 의지만 있으면, 9명 지금 이미 연금 수령자일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이 경우에 늦게 임용이 됐으면 이 대상자는 20년 근무해야지 연금을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20년을 못 채워서 연금을 못 받는 사람도 예외적으로 있더라고요. 어쨌든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 수령자라고 하면 5년이나 기간 있잖아요. 피해기간을 산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어렵다고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첫 번째, 해직교원에 대해서는 물론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전교조 문제라든지 시국사건, 사학민주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분들은 일단 교원으로 임용이 된 상태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억울하게 해직이 되고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기본권 침해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타깃은 그 당시에 어떤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들과고, 진화위 결정으로 해서 임용제외자들은 원래 예비교원으로 임용이 됐었어야 하는데 아예 그 기회마저 그때 그 당시 문교부의 어떤 지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임용조차 못 된 상태에서 교원이 못 됐다가 나중에서야 임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진화위라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임용제외사건 결정에 대한 하나의 국가에 대한 명확한 권고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해 주는 게 국가의 도리가 아니냐, 물론 재원이 많고 그런 억울한 사건들까지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좁한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명확하게, 시급하게 권고를 받은 부분을 해소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드린 거고요.

뒷부분에 퇴직자 제외하는 부분은 저희 실무과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교원정책과장 신진용 교원정책과장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퇴직자 관련해서 연금을 70조를 준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도

했고 공무원연금을 관장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을 관장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을 소급하여 산입하는 거고 연금 수급자이면서 연금 기여자라는 지위를 동시에 부여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다시 소급해서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첫 번째 의견을 정리했구요.

두 번째는 과거의 해직공무원 복직법 같은 경우에도 퇴직자는 재직기간 소급 산입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관련해서 타 공적연금이 중복해서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타 공적연금과의 중복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퇴직교원의 연금 산입까지 고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강민정 위원 제가 잠깐만.

적어도 예를 들면 피해기간 동안에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자 수혜자이자 기여자, 그 기간 동안에 연금 불입 의무가 있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택지는 좀 열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9명 중에 그 피해기간 동안에 연금을…… 우리가 보통 해직됐다 복직되면 그렇게 하거든요. 해직된 기간 동안에 연금을 일시불로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살리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연금의 수령, 호봉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 그러면 못 하지만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선택지를 주고 그 기여 부분을 부담하고 이 연금의 다른 재직자하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육부교원정책과장 신진용 그게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심정적으로 가능한지 부분하고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부분을 좀 구분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무원연금 자체를 관장하고 있는 인사혁신처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런 세 가지 사유 그리고 과거 사례들을 빌려서 지금 현재 아홉 분에 대한 공무원연금 관련해서는 일시불로 받았든지 아니면 분할 납부를 하든지 이미 법률관계가 형

성이 됐고 법률관계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관계를 다시 소급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법적 안정성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 저는 국회에 들어온 이유 중의 하나가 오도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 이게 제 나름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념을 지키고 그리고 시대의 불의와 맞서서 싸웠다는 점에서 저는 해직교원이나 임용제외 교원들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계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득구 위원 그 부분 동의하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그럼요.

○강득구 위원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름대로 차선택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동시에 해직교원분들, 예를 들면 최소한 호봉이랑 호봉에 따른 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안 되나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제가……

○강득구 위원 아니, 반복되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교육부차관 장상윤 물론 전향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임용제외 교원처럼, 진화위처럼 이런 것을 밝히는 쪽에서의 어떤 명확한 권고나 또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침해 정도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조치를 하라라는 조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저희가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까 수정의견 드린 것도 보면 승진이나 보수 이런 것에 소급적용을 못 하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현행 법리상 또는 과거의 전례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의 어떤 심정적인 것보다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득구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 땅에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교직을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현실을 수용합니다.

○강민정 위원 저도 마지막 10초만 얘기할게요.

지금 강득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약간 해소는 됐는데 아까 제 질문에 대해서 1500명의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불가능한 것처럼 이런 위딩이 남아 있다는 것, 그 부분은 사실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하신 거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정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강득구 의원과 권은희 의원께서 이렇게 현장교원들 안에 국가, 어떻게 보면 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법안을 발의해서 나서 주셔서 현장교사 출신 당사자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민주화운동 관련된 해직교원분들과 또 퇴직교원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점은 저희도 아쉽지만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원통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민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는 국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분들도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이번 법안처럼 여러 가지 어려웠던 과정에 큰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권은희 의원님과 강득구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동용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김영호 서동용 위원님 발언 있으세요?

○서동용 위원 예, 저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법안을 맞추다 보니까 권은희 의원님 안으로 됐고 그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 추후 개정을 통해서 독재정권 시절 사회운동을 하다가 억울하게 생업을 박탈당한 예비교원과 교원들의 권익 회복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부 논의가 됐던 승진 경력 기간 문제도 저는 그게 그렇게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입장을 조금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법적 안정성은 그 사람들이 생업을 저당잡혔던 그 기간 동안 아니겠어요? 이 기간을 회복하는 데, 회복해 주는 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법적 안정성을 뭐 그렇게 많이 해하는 문제겠어요.

저는 퇴직한 교원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정

요소들을 빼놓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 다시 산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문제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국회에서도 이 문제들을, 좀 안타깝게 빠져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이제 대안 의결을 하려 하는데요. 의사일정 제13항, 14항을 권은희 의원님 법안으로 의결 처리를 할 텐데 제명을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해도 될까요? 동의해 주시면 그 제명으로 가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어쨌든 이걸 권은희 의원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의견을 모은 거니까.

○소위원장 김영호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쭙보고, 특별히 이걸 없으면 제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원래 있던 특별법을 그대로 살린 거지요?

○서동용 위원 그게 원래 있던 특별법이니까요.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13항이에요, 13항. 13항의 제명을 의결 법안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심사를 조금 더 할까요? 예정된 시간은 사실 6시 반까지였는데요.

(「내일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내일이요?

○서동용 위원 15번이……

○강민정 위원 질문 하나 있는데 아까 9항 있잖아요. 9항을 내일로 미룬 것은 여기에 제가 발의한 적립금 그걸 내일 병합하려고……

○소위원장 김영호 예, 그걸 병합심사를 하는 거지요.

○강민정 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그 법안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은 제출돼서 병합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영호 그럴까요?

○강득구 위원 예.

○서동용 위원 15번이 축구 결의안이니까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소위원장 김영호 그렇지요. 15항까지 딱 하지요. 홀수로 자르지요, 홀수. 15항까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축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지민 자료 1쪽입니다.

느린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학습·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또한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배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동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느린학습자의 교육과 자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제도를 마련하도록 촉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주문 제1호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및 예산 지원 노력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현재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로서 명시적인 교육 관계 법령은 부재한 실정으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계선 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8쪽입니다.

주문 제2호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다만 주문 제2호에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결의안에서 촉구하는 내용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교육부 외에 다른 부처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결의안의 촉구 대상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주문 제3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주문 제3호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용어가 포함되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주체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당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을 포괄하는 용어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금방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은데 제목이 느린학습자이기 때문에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이렇게 표현하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다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면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용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마치실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물리치료사 관련해서 한 가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소위원장 김영호 예.

○서동용 위원 차관님, 전문대학에 간호학과를

두고 있는 경우 이게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서동용 위원** 각 학교마다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선택이라기보다 제가 알고로는 간호학과에 아마 교과과정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용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에 간호학과를 두는 데가 3년제 간호학과를 두는 데도 있고 4년제 간호학과를 두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학교마다 자기 선택에 의해서 3년, 4년을 하는 거고 그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부족한 것은 더 자기들이 스스로 보충해서 가는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도 전문대학 안에 물리치료사 4년제를 두는 경우가 각 대학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대학은 3년, 어떤 데는 4년 이러니까 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거여서 모든 물리치료사학과 전문대학이 다 4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다음에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1항에 대해서 아까 결론을 못 짓고 우리 비공개 때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역시 계속 논의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1항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 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반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학규제혁신국장
교원정책과장
한국교직원공제회사
사업운영부장

장	상	윤
신	문	규
김	정	연
이	해	숙
신	진	용
박	병	철

○출석 위원(7인)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영호
서동용	이태규	조경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전문위원	이지민